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 제의 요구안

의안 번호	236
----------	-----

제출년월일 : 1993. 1. 7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992년 12월 24일 충청북도의회로 부터 이송되어온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및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선서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지방자치법에 위배

○ 선서란 『증인·감정인등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진술하고, 성실하게 증언, 감정할 것을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사항임 (헌법 제37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의 선서 규정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를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에서의 선서규정을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함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2. 조례로서 벌칙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 형법, 지방자치법에 위배

-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법률의 위임없이 독자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15조)
- 한편,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이하의 징역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을
· 개별 법률에 의한 수권규정으로 보아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등의 체형까지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체벌규정까지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게 되어 헌법(제 12조)과 형법(제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치국가의 기본이념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처벌대상을 법령이 정하면서 벌칙은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처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또한, 개별법률에서 시도조례에 의한 벌칙을 정할 때 그 상한기준을 제시하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임
-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없이 지방의회의 조례로서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위증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무리한 해석이며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봄.

첨부 1. 조례안 1 부.

2. 내무부장관 재의요구지시 공문사본 1 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행정 사무감사나 조사(이하 감사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인출석등의 의무) 의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 의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충청북도나 그 소속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국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의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지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제5조 (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및 반을 포함한다)가 이 조례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참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 (증인등에 대한 동행명령)** 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도록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주거·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⑤ 동행명령장은 의회사무직원으로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 교도소 또는 군 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제7조 (증인·감정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 반장 또는 소위원장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선서의 방식)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의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의 요구를 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검증) ①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②충청북도과 그 소속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여비·수당의 지급)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

제12조 (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 (의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3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위증등의 죄)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3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백은 의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고발) ①의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장 명의로 한다.

제16조 (의회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3-01-06 14:04 TEL: 02-731-2310

권 분	F A X	권 종 번호
	111-745 73 / 6	003

우 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 전화 731-2310 (행 2310) 전송

문서번호 행정02121 4
 시행일자 1993. 01. 06. (1년)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법무담당관

선 결	담당관	지	
접 입 시 각	1993. 1. 7	시	
수 번호	23	계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목 시도 의회에서 증언감정증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지시

1. 부산 법무02124-2499('92.12.28), 대구 법무02124-691('92.12.29),
 광주 법무02124-1127('92.12.28), 대전 법무02124-586('92.12.28), 충북 법무02124-
 673('92.12.29), 충남 법무02124-567('92.12.29), 전남 법무02124-1160('92.12.29),
 경북 법무02100-520('92.12.29), 경남 법무02101-740('92.12.28), 제주 법무02114-
 1002('92.12.30)호와 관련임.

2. 상기 관련호로 보고한 시도 의회에서 증언감정증에 관한 조례안은
 별첨과 같은 이유로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 지시하니 법정기일내에 귀시도 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기 바람.

3. 또한 귀시도 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여 위법한 조례가 공포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첨부 : 재의요구이유서 1부. 끝

내 부 장 관
지방행정국장 전결



수신처 : 나02,03,05,06,12,13,15,16,17,18